

|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| 2217593      |
| 의 퇴 인 | 서미화 의원       |
| 회 답 일 | 2026. 3. 31. |
| 추계번호  | 26C1540      |

#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## I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 고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  | 안 제11조<br>(정당한 편의제공<br>의무) 제3항 | 사용자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됨<br>1.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원활한 수유 지원<br>2. 자녀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방식의 지원<br>3. 그 밖에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| 의무규정 |

## 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### 1. 근거 규정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| 미첨부 근거 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안 제11조<br>(정당한 편의제공<br>의무) |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|

### 2. 상세 사유

□ 안 제11조제3항에 명시된 “사용자”의 범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고, 이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수유 지원, 자녀상태 확인을 위한 소통방식 지원, 직장보육서비스를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안 제11조제5항은 적용대상 사업장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
- 현행법 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은 기존의 장애인 편의 제공 의무를 지는 사업장의 범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고 있어, 향후 개정안 제11조제3항에 명시된 사용자의 범위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

-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 시행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사업의 확대 또는 신규 사업 도입 여부 및 그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  - 현재 일반 수유시설에 대해서는 「모자보건법」 등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가,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가 관련 규정 또는 지침을 마련하여 관련 시설 설치를 관리하고 있음
  - 현 시점에서는 장애인근로자에게 특화된 수유 지원 시설이나 서비스, 자녀 상태 확인을 위한 소통방식 지원,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하여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어려움
-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### Ⅲ. 부대의견

- 없음

### Ⅳ. 작성자

- 성명

|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|-----|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 |
| 사회비용추계과 | 김우림 | 이진우 |

- 대표연락처
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성명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주소           |
| 김우림 | 02-6788-3738 | wrkim@nabo.go.kr |